2022
전주유아교육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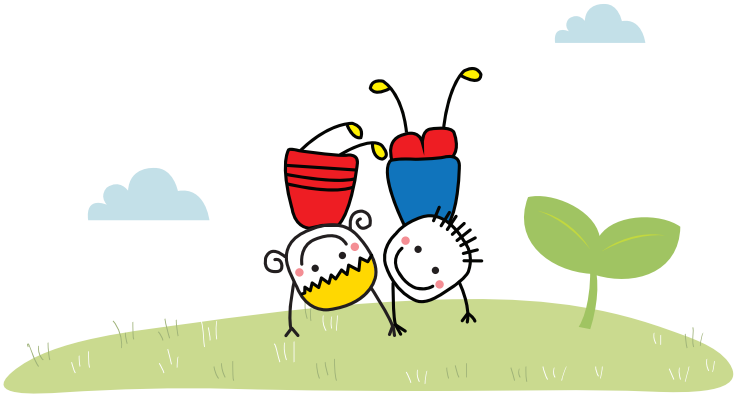

목차

Ⅰ 2022년 전주유아교육 실천 방향 _ 05

Ⅱ 2021년 전주유아교육 추진 성과 _ 06

Ⅲ 2022년 핵심과제별 주요 사업 _ 08

제1장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 _ 09

1-1. 유아·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_ 11

1-2.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 _ 13

1-3. 원격수업 지원 _ 14

1-4. 실내 누리놀이터 조성 지원 _ 15

1-5.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 _ 16

1-6.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_ 19

1-7.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지원 _ 22

1-8. 돌봄교실 운영 지원 _ 23

제2장 상호존중과 상생을 실현하는 선생님 _ 25

2-1. 유치원 교원 연수 _ 26

2-2. 유치원 컨설팅 장학 _ 27

2-3.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운영 _ 28

2-4.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 _ 29

2-5.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 _ 33

2-6.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표창 _ 34

제3장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지원 행정 _ 35

3-1. 유아학비 지원 _ 36
3-2. 다문화 유아 및 가정에 대한 지원 _ 38
3-3.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_ 39
3-4.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 _ 41
3-5.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_ 42
3-6. 유치원 신·증설 적정화 _ 44
3-7. 4세대 지능형 나이스(유치원) 기반 구축 _ 45
3-8. 유치원정보공시제도 정착 _ 46
3-9.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운영 지원 _ 48
3-10.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(처음학교로) 운영 _ 49
3-11.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_ 50

제4장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_ 51

4-1. 유치원(기관)평가 운영 _ 52
4-2. 유치원 보건환경 개선 _ 54
4-3. 유치원 급식안전 강화 _ 55
4-4.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 _ 56
4-5. 행복안전유치원 운영 _ 57
4-6.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_ 58
4-7. 유아 성교육 내실화 교육 _ 59
4-8.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_ 61

부록

2022년 주요 행사 일정 _ 62
교직원 의무연수 안내 _ 63

2022
전주유아교육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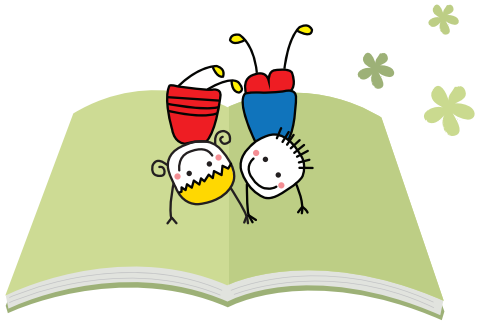

Ⅰ 2022년 전주유아교육 실천 방향

교육비전

공감과 소통으로 행복한 전주유아교육

추진 방향

- 유아·놀이 중심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의 성장과 발달 도모
- 공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
- 유치원·학부모·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교육공동체 협력문화 조성

Ⅱ 2021년 전주유아교육 추진 성과

1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

사 업 명	주요 성과	발전 방향
교원역량강화 지원으로 전문성 신장	◦ 교원 성장 연수 지원 - 유아·놀이중심 교육과정 연수: 12회 - 성인지·성행동 이해 연수: 4월, 3회 - 저경력교사 성장지원 연수: 4~6월, 6회 ◦ 소통과 나눔의 컨설팅 운영 - 자율성에 기반을 둔 컨설팅 지원 : 85회 실시 -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컨설팅: 37개원 - 사립유치원 1:1 맞춤형 컨설팅: 61개원 ◦ 유치원 전임 원장(감) 연수: 3회 ◦ 지속가능한 환경생태 연수: 7월, 2회 ◦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: 10월, 2회 ◦ 유아가 행복한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- 찾아가는 독서 한마당: 6~7월, 14개원 ◦ 유아교육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: 11월, 2회 - '나는 어떤 부모인가' MBTI성격 유형별 자녀 양육 코칭	유아·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
방과후 과정 지원 체제 강화	◦ 방과후 과정 운영 수요 현황 - 방과후 과정 운영: 112개원	쉼이 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
돌봄교실 운영 지원체제 강화	◦ 돌봄교실 운영 지원 - 온종일 돌봄: 2개원(공립1, 사립1) - 저녁돌봄: 16개원(사립 16) -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: 21개원(공립 9, 사립 12)	돌봄교실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

2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

사 업 명	주요 성과	발전 방향
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	◦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교육감 표창: 8명 ◦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교육장 표창:15명	
교육실습협력 유치원 운영	◦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지정, 운영: 19개원 - 가산점 인정 교원: 72명(111건)	
배움과 성장이 있는 동아리 운영	◦ 공립유치원 교원 자율 동아리: 15팀 ◦ 공·사립유치원 수업 동아리: 15팀	

3 유아교육 기회 및 기반 구축

사 업 명	주요 성과	발전 방향
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	◦ 유아학비 지원 - 교육과정: 공립 80천원, 사립 260천원 - 방과후 과정: 공립 50천원, 사립 70천원 (총 공립: 130천원, 사립: 330천원)	유아학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관할청과 공동 지도· 감독
유치원 신·증설의 적정화	◦ 신설: 3개원, 31학급 - 전주새뜰유치원(일반 7학급) - 전주성현유치원(일반 9학급, 특수 3학급) - 전주푸른샘유치원(일반 9학급, 특수 3학급) ◦ 증설: 2개원 3학급 - 전주홍산유치원(일반 1학급, 특수 1학급) - 전주새솔유치원(특수 1학급)	병설 통합 및 학급 신·증설을 통한 연령별 반편성 추진

Ⅲ

2022년
핵심과제별 주요 사업

제1장

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실현

1-1. 유아·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
1-2.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
1-3. 원격수업 지원
1-4. 실내 누리놀이터 조성 지원
1-5.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
1-6.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
1-7.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지원
1-8. 돌봄교실 운영 지원

III

2022년 핵심과제별 주요 사업

1-1 유아·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

추진 목적

- 놀이가 배움이 되는 교육활동 운영
- 유아 주도의 놀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본질 회복
- 교육과정 운영 시간 준수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

추진 근거

-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(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0-02호)
- 20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(교육부)

추진 내용

추진 기관	중점 추진 사업
교육지원청	◆ 지역 특성을 살린 유아·놀이중심 교육과정 지원 계획 수립·시행 – 교육과정 운영 시간 4~5시간 준수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컨설팅 – 1일 2시간 이상 충분한 놀이시간(바깥놀이 포함) 확보·운영 점검 ◆ 단위 유치원 원격수업계획 수립 여부 컨설팅 실시 ◆ 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실행력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◆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연수 추진(유아·놀이중심 교육) ◆ 교원 자율연수 및 현장 중심 컨설팅을 통한 유아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◆ 국가·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실시 ◆ 다문화 가정과 유아에 대한 교육 및 학부모 참여 활성화 지원 ◆ 놀이 심화·확장을 지원하는 교사의 실행력 향상 컨설팅 실시 ◆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: 교원 연수 실시 ◆ 감염병 관련 원격/등원수업 전환 지원
유치원	◆ 단위 유치원 자율성에 기반한 유치원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– 교육과정 운영 시간 4~5시간 준수 ※ 교육활동 시작 시간: 오전 9시 전후(30분 조정 가능) – 교육과정 운영 시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1일 2시간 이상 충분한 놀이시간 (바깥놀이 포함) 확보 ※ 기후 등의 여건에 따라 실내·외활동 여부 판단 – 관련 법령 및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 교육과정 반영 ※ 교직원 의무연수(부록 참고) ◆ 실천 중심의 창의·인성교육 운영 – 단위 유치원 인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– 유치원 특색에 맞는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– 유아기 인성 함양의 중요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한 학부모교육 실시 – 교육과정 내 특성화 활동 금지(미준수 시 행정지도 및 조치 강화)

유치원	◆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유아의 경험과 연계 구성 ◆ 원격수업계획 수립 및 필요시 유아·놀이중심 원격수업 운영 ◆ 교육활동 실행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지원 실시 ◆ 유아 발달 단계 및 유아교육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

중점 추진 사항

• 유아·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모든 유아의 건전한 성장 지원

- 유아·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
  · 유아가 주도하여 이끌어 가는 놀이가 배움이 되는 교육여건 지원
  ·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평가 정착
  ·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, 일상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또래 간 상호작용과 놀이중심의 교육활동 운영
  ·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통합적으로 발달하도록 지원
  ·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활동 전개

• 국가·사회적 요구 반영

-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교육 실천
  ·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 실천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교육 실시
  · 실천하는 지구사랑 환경사랑(가정에서, 유치원에서, 혼자서, 다함께) 교육 전개
- 유치원 인권 · 인성 · 안전교육 실시[인성 · 인권감수성]
  · 7대 학교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에 반영 및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
  · 교육부 개발 자료 및 학교안전정보센터(www.schoolsafe.kr) 활용
- 다문화 유아와 가정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
  · 다름에 대한 존중, 문화 이해 교육, 언어교육, 학부모 교육, 교원 교육 등

• 학부모 유아교육 참여 활성화

- 유아 발달 단계 및 유아교육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
- 학부모 지원 자료 안내
  ·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방,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집콕! 놀이콕!, 아이누리포털(www.i-nuri.go.kr)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구정은	전화번호	063) 270-6121

1-2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

추진 목적

-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따른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·확산 및 연구결과 일반화
- 부모의 유아 놀이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-자녀 간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유아의 건강한 성장·발달 지원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[2218~2022] 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1595, 2018.3.30.)
- 2022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172, 2022.1.10.)

추진 내용

-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자료 개발·공유(5종)

  - 유치원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활용 안내서
  - 놀이꾸러미 활용 원격교육 지원자료 및 콘텐츠
  - 디지털 놀이환경 지원자료 및 콘텐츠
  - 유치원 인공지능 소통 ·활용 지원자료 및 콘텐츠
  -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지원 프로그램

* 자료 탑재: i-누리 포털

- 미래형 거점유치원 운영

  - 대　　상: 공·사립유치원 4개원
  - 운영과제: 누리과정에 근거한 디지털 유아 놀이 환경 지원 방안
  - 운영주제: 운영과제에 따른 유치원별 운영주제 선정
  - 일 반 화: 수업열기(유치원별 연4회), 보고서 탑재
    · 수업열기: 미래형 교육과정 아이디어 공유 및 자료 일반화
    · 보고서 탑재(2023. 2.):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구정은	전화번호	063) 270-6121

1-3 원격수업 지원

추진 목적

-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학사운영 지원
- 소외되는 유아 없이 모든 유아의 학습권 및 놀권리 보장

추진 근거

- 2022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3733, 2021.12.31.)

추진 방향

- 유치원 시설 이용 제한 발생 대비, 유치원 실정에 맞는 원격수업계획 사전 마련
  - 개인단위 등원중지 유아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(대체학습 포함) 제공 방법 마련
- 유치원(연령, 학급 등) 등원이 중지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
  - 단위유치원(교육지원청)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, 교육(지원)청* 및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결정

    * 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 상황실, 교육(지원)청 교육과정 담당자와 협의 필수

도교육청	교육지원청	유치원
· 감염병 관련 원격/등원수업 전환 지원 · 유치원원격수업지원단 조직 · 운영 · 원격수업 지원자료 개발 및 탑재	· 감염병 관련 원격/등원수업 전환 지원 · 단위유치원 원격수업계획 수립 여부 컨설팅	· 단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원격수업 운영계획수립 · 원격수업 운영 -비상 시 대비 유아 수만큼 놀이꾸러미 비치 등

-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누리집 탑재(매월)

·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/교육정보/학교교육/유아교육/원격수업지원방

-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계획

· 원격수업 시 유치원별 또는 학급별 '유아 놀이 배움 지원 계획'을 수립하고 각 가정으로 안내하여 원격수업의 유치원-가정 연계 교육 강화

· 실물자료 중심 놀이꾸러미, 온라인 콘텐츠*, EBS 1TV 방송 〈우리집 유치원〉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을 통한 원격수업 운영

· 1주일 내내 원격수업 지속 시, 주 1회 이상 유·무선 소통 실시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구정은	전화번호	063) 270-6121

1-4 실내 누리놀이터 조성 지원

추진 목적

- 유아·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과 행복권 보장
- 다양한 놀이 환경 구성을 통한 유아의 놀이 활성화로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·발달 도모
- 미세먼지, 황사, 우천, 혹서기, 혹한기 대비 놀이 공간 조성으로 유아의 놀이 보장

추진 근거

-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
- 2019 개정 누리과정(교육부 고시 제2019-189호)

추진 방향

- 실내 놀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유치원 중 놀이터 조성 공간이 있는 희망 유치원 선정·운영
- 유아의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 공간 구성으로 모험과 도전을 하면서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경험 제공
-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유아가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제공
- 선정된 유치원은 놀이 공간 조성 후, 운영 사례 일반화 노력
  (도교육청 누리집 탑재, 타 기관 공개 등)

추진 내용

- 운영 기간: 2022. 3월 ~ 2023. 2월
- 대상 유치원 수: 공·사립유치원 50개원
- 지원 예산: 유치원별 20,000천원(필요 시, 유치원 대응투자 가능)
- 지원 조건

- 스프링클러 설치(유치원별 면적 기준에 따른 설치조건 참조) 등
- 실내 누리놀이터 조성 공간 확보(유휴 보통교실, 유·초 연계공간, 복도공간, 기존 보완 등)

※ 2021년 선정 유치원은 제외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구정은	전화번호	063) 270-6121

1-5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

추진 목적

-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정서발달 및 행복감 증진
-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·학부모 만족도 제고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2조, 제12조, 제13조, 제27조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, 제33조
- 2022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)

추진 방향

-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실수요자 중심의 운영
-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·놀이중심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편성·운영
-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유아 사교육 문화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과도한 학습 중심 활동 및 수익자부담경비가 발행하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지양

추진 내용

- 운영계획

– 방과후 과정 연간계획 수립 및 유치원 운영계획에 반영

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

① 유치원 여건 및 학부모 수요 조사 등을 반영하여 방과후 과정 연간 운영 계획 수립
②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(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4)
-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계획(미 참여 유아 대책 포함), 운영시간, 운영 장소, 참여대상, 인력배치, 소요비용, 안전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 포함

③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(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)
④ 방과후 과정 운영 사항 정보공시 탑재(「교육기관정보공개법」 제5조의2)
- 운영 시간, 학급편성, 참여유아 수, 방과후 과정 교육비용,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비 등

- 운영일수 및 시간

– 운영일수: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운영
– 운영시간: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되, 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이용시간 조정* 가능

* 1시간 이내의 이용시간 조정은 전체 유아 대상 일괄 적용이 아닌, 개별 유아 대상 적용 시간임

- 학급편성: 전라북도교육청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적용
- 이용대상
  - 맞벌이, 저소득,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
  - 학부모 수요 및 유치원별 수용 여건에 따라 교육공동체에서 참여 대상 결정
- 운영내용
  -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·놀이중심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편성·운영
  - 유아 발달을 저해하는 학습 중심 활동 및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하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지양 원칙(단, 학부모 수요에 따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편성 도교육청 기준 반드시 준수)
- 안전관리
  -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
  - 매일 출결 상황 파악
  - 참여 유아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운영하되, 학부모 동반 귀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(성인) 사전 지정제 실시
  - 건강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 시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
  -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간식지도 및 관리(방학 중 방과후 과정 급식 포함)
    - ■ 보존식 관리(p.55 참고)
- 방학 중 급식 운영
  - 방학 중 자체급식 권장, 자체급식 미운영 유치원은 위탁급식 활용으로 학부모 도시락 지참 불편 해소
  - 공립유치원 방학 중 혼합급식 개선비 지원

<혼합급식이란?>
유치원에서 급식의 일부 제공(예: 밥)+제공하지 않는 것은 유아가 각자 지참(예: 반찬)
(가정에서 밥과 반찬 모두 가져오는 경우 포함)
※ 근거: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3761(2021.7.7.)

  - 위탁급식 시, 제공 업체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확인
    - ■ 계약 체결 시, 계약 담당 부서에서 업무 협조
    - ■ 위탁급식 시, 참고자료

유치원 급식 운영·영양관리 안내서(교육부) p.12
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(전라북도교육청) pp.39-47
※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

- **졸업식 이후 졸업생 방과후 과정 이용**
  - 유아는 졸업식 이후에도 학년도가 끝나는 2월 말일까지 방과후 과정 이용 대상임
  - '졸업'은 '졸업식'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, 졸업은 「유아교육법」에서 학년도가 끝나는 2월 말일임
- **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 계획**
  - (유아 평가)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
  - (방과후 과정 운영 평가) 방과후 과정이 유아·놀이 중심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
  - (방과후 과정 운영 결과 학부모 설문 조사) 방과후 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 후, 결과를 다음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

기대효과

- 질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도모
- 돌봄 공백 최소화로 학부모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정보영	전화번호	063) 270-6126

1-6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

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

수익자부담경비 발생여부·자체 인력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유아 경험의 확장 등을 위해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특정 분야 유아 활동

※ 학부모 수요 조사 실시 →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 (회의록 공개) → 프로그램 내용·학부모 부담금 등 공시

추진 목적

- 유아발달에 적합한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의 다양한 경험 확장
- 학부모 수요에 따른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2조, 제12조, 제13조, 제27조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
- 2022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)

추진 방향

- 학부모 수요에 따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,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
-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유아 사교육 문화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과도한 학습 중심 활동 및 수익자부담경비가 발행하는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지양
-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운영
- 신청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미 참여 유아 지도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리 철저

추진 내용

- 운영 절차
  - 학부모 수요 조사 실시 →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 (회의록 공개) → 프로그램내용, 경비 등 관련 정보 공시('유치원 알리미')
- 운영 원칙
  - 유아 1인당 주 3개 이하, 1일 1개, 30분에서 1시간 이내, 프로그램 당 1회로 운영
  -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

● 프로그램 운영 기준

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기준 및 사례

☞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
- ▸ 유치원 자체 인력 및 외부 강사를 통한 미술, 체육, 음악 등의 예체능 활동
- ▸ 별도의 교구를 구입하여 유치원 자체 인력(외부 자원봉사자 포함)이 운영하는 활동
- ▸ 유치원 자체 인력 및 외부 강사를 통해 실시하는 놀이 중심 다문화 체험 활동

※ 유치원 교직원이 특정 프로그램 및 교재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해당

● 프로그램 비용 산정

- 참여유아 수, 실시 횟수, 강사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
- 유아학비(방과후 과정)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비 내 운영으로 학부모 부담금 최소화 지향
- 1시간 32,000원 권장(농어촌지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추가 지원 가능)

※ 전라북도교육청 도서·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(2016. 1. 4.)

● 프로그램 선정 및 위탁

-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부모 사전 수요 조사 실시
- 설문결과에 따라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-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 필수
- (개인위탁) 만족도 조사 80점 이상인 경우 등 총 2년 이내 연장 계약 가능
- (업체위탁)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코로나19로 사업정지한 기간에 한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 계약 변경 가능

● 프로그램 강사 자격

- 개인·업체위탁 강사 공통
  - ■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(예정)자
  - ■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·기능 보유자
  - ■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 가진 인적 자원(군인, 귀농인, 기업인 등)
  - ■ 기타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- ■ 당해 유치원 교직원의 직계 존·비속 및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재공고 시에만 지원 가능 (강사 모집 공고 시 정확히 안내)
- 외국인 계약 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검증·확인 철저

※ 외국인전문학원,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(단체)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"회화지도(E-2) 체류자격" 외국인은 유치원에서의 활동 금지

- **강사 계약 시 참고 사항**

– 강사 계약 시 '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'(발간등록번호 2021-546) 위·수탁 계약서 활용 가능

※ 채용계약서, 근로계약서가 아님에 유의

–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고용보험 가입(2022년 7월 적용 예정)

– (개인위탁)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평가를 거쳐 총 2년 미만으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, 계약 기간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(감염병 등 포함) 등으로 인한 미운영 기간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연장을 위한 계약 변경을 할 때에도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함

– (개인위탁)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적용(사업자 등록증 미제출)

※ 개인위탁 강사는 주 14시간까지만 가능함

– (업체위탁) 업체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, 프로그램과 업체 소속 강사의 질 등을 우선적으로 검증

- **평가 및 환류**

–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및 지도 강사별 만족도 조사 실시

–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연 1회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공개 실시

– 평가 결과는 다음 운영 계획에 반영

기대효과

-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 보장
- 학부모의 사교육 문화 개선 및 학부모 부담 경감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정보영	전화번호	063) 270-6126

1-7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지원

추진 목적

-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자격 교사 배치
-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 구현
-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의 안정적인 사회 활동 보장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(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)
- 교육공무원법 제32조(기간제교원)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(기간제교원의 임용)
-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(초임호봉의 확정)
-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[교원인사과]

추진 방향

-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배치
  -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정원 외 계약제 교원이며,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·돌봄 담당
- 인건비 지원 및 복무 관리 철저

– 법정 연수 의무 이수(폭력예방교육, 인성교육, 안전교육 등 법정 의무 연수)
(전북교육연수원 교직원 의무연수 통합과정〈원격연수〉을 통한 이수 가능)

추진 내용

- 방과후 과정 정규교사 미 배치 학급에 담당인력(방과후 정원 외 시간제기간제교사) 배치
- 학기 중 1일 3시간 또는 4시간(방학 중 8시간까지)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최아람	전화번호	063) 270-6123

1-8 돌봄교실 운영 지원

추진 목적

-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돌봄교실 운영으로 유아의 정서발달 및 행복감 증진
-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유아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
- 맞벌이 가정, 저소득층, 한부모 가정 등 학부모의 돌봄 및 양육 부담 경감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2조, 제12조, 제13조, 27조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

추진 방향

- 학부모의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 이외의 아침 돌봄,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, 저녁 돌봄, 온종일 돌봄 등 연중 운영
- 유아의 정서발달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한 유아·놀이중심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편성·운영
- 감염병 등 휴업 상황에 대비하여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
- 연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의견조사 실시 및 반영
- 세부사항은 유치원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

추진 내용

- 운영 형태

구분(운영시간)	내용	운영 시간(예)
아침 돌봄교실	아침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전까지 운영	07:40~09:00
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	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* 이후부터 19:00까지 운영	17:00~19:00
저녁 돌봄교실	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* 이후부터 20:00까지 운영	17:00~20:00
온종일 돌봄교실	아침돌봄+(교육과정, 방과후 과정)+저녁돌봄으로 운영	07:40~22:00

* 방과후 과정 최소 보장 시간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임(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이용 시간 조정 가능, 운영 시간 일괄 조정이 아님)

- **지원 유치원수**
  - 온종일 돌봄교실: 2개원(공립 1개원, 사립 1개원)
  - 저녁 돌봄교실: 13개원(사립 13개원)
  -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: 40개원(공립 9개원, 사립 31개원)
- **이용대상**
  - 맞벌이, 저소득층 가정, 한부모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유아 중 희망자
  - 학급 편성: 돌봄교실(1교실 당) 대상 인원은 20명 내외(최대 22명) 권장
  - 참여 유아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- **예산지원**
  - 유형별 돌봄교실(온종일, 저녁, 방과후 과정 연장)에 따라 차등 지원
  - 인건비, 급·간식비, 기타 운영비 등
- **인력배치**
  - 돌봄담당 인력: 돌봄전담사(단,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은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 및 교사 등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)
  - 돌봄전담사 인건비는 도교육청 기준 적용
  - 방과후 과정 연장 돌봄교실 지도 수당은 1시간(60분) 10,000원, 1일 2시간 기준
- **안전관리**
  - 돌봄교실에 대해 전체적인 안전 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
  -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확보: 현관 CCTV, 비디오폰 등
  - 돌봄교실 참여 유아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운영하되, 학부모 동반 귀가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(성인) 사전 지정제 실시
    ※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
  - 유치원 주변 파출소나 지구대 등과 협력하여 순찰 및 유치원 경비 강화
  -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아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
- **급식관리**
  -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통해 급식 제공
  - 유아 영양 기준량에 충족하는 식단 관리 및 운영
  - 정수기 냉·온수기 정기 검사 실시
  - 보존식 관리 및 검식
- **운영 평가 및 환류**
  - 학부모 만족도 조사, 돌봄교실 활동 계획 검토,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및 환류 실시
  - 평가 결과는 공유하고 돌봄교실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정보영	전화번호	063) 270-6126

제2장

상호존중과 상생을 실현하는 선생님

2-1. 유치원 교원 연수

2-2. 유치원 컨설팅 장학

2-3.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운영

2-4.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

2-5.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

2-6.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표창

2-1 유치원 교원 연수

추진 목적

-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제고
- 공감·소통·나눔을 통한 유치원 교원 역량강화
-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컨설팅 강화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6조, 교육공무원법 제40조(특별연수), 제41조

지원 대상

- 관내 공·사립유치원 교원

추진 내용

- 전주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지원
  - 관리자(전임 원장·원감, 사립유치원 원장) 역량 강화 연수
  - 컨설턴트 역량강화 연수
  -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원 연수
  - 저경력 교사 성장지원 연수
  -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생태놀이 연수
  - 공간혁신을 위한 선진 교육기관 탐방
  - 놀이중심교육과정에서의 관찰과 기록 연수
  - 수석교사와 함께 하는 학습공동체 사례 나눔
  - 함께 성장하는 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(자율동아리) 운영 지원
  - 함께 가는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구정은	전화번호	063) 270-6121

2-2 유치원 컨설팅 장학

추진 목적

- 교육공동체가 소통·협력하는 교육과정 중심 유치원 문화 조성
-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교원 역량강화
- 교원의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자율장학 활성화

추진 근거

- 교육기본법 제17조,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
추진 방향

- 원내 자율장학,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 지원 컨설팅, 유치원 간 컨설팅 등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강화
-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분야 컨설팅 강화
  - 교육과정(교육과정 편성·운영, 놀이 이해, 놀이 실행, 놀이 지원 컨설팅 등)
  - 방과후 과정(방학 중 운영, 돌봄교실 운영,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등)
  - 교수·학습(놀이 기록지 작성 및 가정과의 연계, 학습공동체 운영 등)
  - 생활, 안전교육(유아 자치활동, 인성·인권교육, 유치원 안전 관리 및 교육 등)
- 컨설팅 강화로 학습공동체 내 교육활동 나눔 및 멘토링 확산

추진 내용

- 기간: 2022. 3. ~ 2021. 12.
- 대상: 관내 공·사립유치원
- 실시 방법

유치원→교육(지원)청	교육(지원)청	현장 중심의 컨설팅 실시	유치원→교육(지원)청
제1단계 컨설팅 요청 신청서 제출 (희망하는 컨설턴트 선정 및 협의)	**제2단계 컨설팅 요청 접수** 요청 내용 안내	**제3단계 컨설팅 실행**	**제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** 공유·확산

- 결과 활용: 컨설팅 사례 나눔 및 공유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구정은	전화번호	063) 270-6121

2-3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운영

추진 목적

-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교원의 실천적 수업 연구 및 전문성 신장
- 예비교사 멘토링을 통한 유아교육 내실화 및 교원의 책무성 강화

추진 근거

- 2022 유·초등 교육공무원 인사업무처리요령(전북교육 2021-498)

추진 내용

- 기간: 2022. 3. ~ 2023. 2.
- 대상: 단설유치원 및 전임원감이 배치된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중 교육실습 협력 유치원으로 선정된 유치원
- 운영방법

가산점 부여대상	가산점 부여기간	실습지도 횟수
- 전임 원감 - 교육과정 정규교사 - 방과후 과정 담당 정교사	- 1회(61일 이상) 실습지도 시 2개월 인정	- 실습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1회만 인정

- 실습기간: 사전실습 → 본 실습 → 사후실습이 1회임

– 사전실습(2주 이상)+본실습(4주 이상)+사후실습(2주 이상)=2개월(휴일포함 61일)

– 본 실습은 반드시 1개월(4주〈28일 이상〉) 내외 현장실습 실시

※ 실습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1회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음 회 시작

- 교육실습생 지도교사 선정 기준

–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

– 유치원장으로부터 교육실습생을 배정 받은 교사

– 실습생 1인에 대하여 2개월(61일)동안 계속적으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정규교사

※ 체계적 실습 지도를 위해 실습기간 중 지도교원의 복무를 강화하고 지도교사의 불가피한 장기부재(장기 연수 및 출장, 연가, 병가 지양) 시 유치원장 판단 하에 대리 지도교사 임명

- 가산점 인정범위

※ 유공교원의 경우, 지도 일수에 근거한 일평정점 부여(0.00033점, 1회 지도시 0.02점 초과 불가)

※ 실습기간(61일) 분절 운영 시 가산점 미부여

예) 사전실습(2주) – 분절(1주) – 본실습(4주) – 사후실습(2주)

- 실습인정 학과
  - 유아교육과, 유아교육 복수전공자,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발급받는 학과
  - 실습생 배정 시, 해당 유치원에서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(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, 아동복지법 제29조의3)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구정은	전화번호	063) 270-6121

2-4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

가.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지원

추진 목적

-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
- 공·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의 단계적 완화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18조, 제26조, 제28조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

추진 내용

- 지원내용

연도	2022년				
구분	구분			담임수당	합계
	교직수당	인건비보조	장기근속수당		
금액	25만원	33만원 (2021년 대비 3만원 인상)	3만원	13만원	74만원

- 지원대상
  - 「유아교육법」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
  - 「교육공무원법」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정년(만 62세)을 초과하지 않은 교원
  - 1일 8시간 이상 상시 근무 교원

- 사학연금, 건강보험 가입 교원
- 인가학급 범위 내 편성학급의 학급담임 교원(담임수당의 경우)
  * 2학급 이하인 경우 원장, 원감의 학급담임 시 담임수당 지급 가능
-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 중 주 15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원(담임수당 미 지원)
  * 방과후 과정 교원 1명이 1학급을 담당하거나 또는 1명이 여러 학급의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모두 해당
- 원장(또는 원감)자격소지자로 임용된 원장(또는 원감)
  * 직무대리 원장(또는 원감) 지원 제외

● **지원 제외 대상**

- 사립유치원 교원의 '월 평균 소득액'이 『공무원연금 기여금 조견표』의 동일 호봉 '기준소득월액' 이상인 교원
- 타 기관을 겸직하거나 타 기관에서 월급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
- 현재 해당 유치원 소속이 아닌 교원
- 교육과정 또는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보조하는 교원
- 1주 15시간 미만 방과후 담당 교원
- 사학연금,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기관부담금 미납 유치원

● **지원 제외 기간**

- 휴직 기간
- 복무 규정 위반 해당 기간(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,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)
  · 연가 범위를 벗어난, 해외 체류 시 기본급 보조 미지급
  · 해외 체류 시, 확인을 위한 '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' 필수 제출
-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 지급 시 임금수준 상향 시까지의 기간
- 학급담임 교원의 출산휴가 또는 1개월 이상 담임 업무 미수행(병가 등) 기간 담임수당 미지급 시 일할 계산

나. 단기대체강사비 지원

추진 목적

● 출산·결혼 등에 대한 휴무 보장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

● 인건비 지원을 통한 대체강사 고용 부담 완화

추진 근거

● 유아교육법 제26조

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, 제32조

추진 내용

● 지원 대상

–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학급담임 및 방과후 과정 담당 교사 중

· 원감, 원장 자격연수에 지명되어 실제 참여한 교사

* 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중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서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원감 포함

· 1정 자격연수에 지명되어 연수에 실제 참여한 교사

* 연수 참여 일수에 따라 지원

· 4일 이상의 병가가 필요한 교사

* 진단서로 증명된 경우 지원

· 4일 이상의 공가가 필요한 교사

* 유치원 근무상황부(원본대조필)에 복무 처리된 경우 지원

* 최소한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

· 도교육청 주관 국외 연수 대상으로 실제 참여한 교사

*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서 학급담임을 맡고 있는 원장, 원감 포함

· 출산 및 결혼 등의 특별휴가가 필요한 교사

※ 연가, 4일 미만 병가 등으로 인한 단기대체강사는 지원대상이 아님

● 지원단가: 1일 74천원

– 지원액 산출: 단기대체 강사 근무 산정일수(근무일수 + 주차일수)×74천원

● 지원내용

–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별표 2의 경조사 유형 및 법정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 중 단기대체 강사비 지원

〔별표 2〕 경조사 유형 및 법정휴가일수

구 분		대 상	법정휴가일수
경조사	결 혼	본 인	5
		자 녀	1
	출 산	배우자	10
	입 양	본 인	20
	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	1
출산휴가		본 인(다 태아)	90(120)

※ 입양의 경우 「입양추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함.

다.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수당 지원

추진 목적

-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

추진 근거

-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('22.3.25. 시행)
- 유아교육법 제26조

추진 내용

-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 지원
- 지원대상

– 「유아교육법」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원 중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교원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최아람	전화번호	063) 270-6123

2-5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인건비 보조금 지원

추진 목적

- 사립유치원 교사의 업무부담 해소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
- 방과후 과정 강사 지원금을 통한 고용 부담 완화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27조
- 18대 교육감 공약사업

추진 내용

- 지원내용

– 방과후 과정 담당 강사를 임용한 사립유치원(학년도별 채용을 기준으로 함)
  · 유치원별 2명 지원(2학급 미만 유치원 1명 지원)
  · 주 15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
  · 매월 인당 800천원 지원

- 방과후 과정 강사 자격 조건

– 「유아교육법」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교사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보육교사
– 「교육공무원법」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정년(만 62세)을 초과하지 않은 강사

- 방과후 과정 강사의 역할

– 교육과정 시간 이후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
  ·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내에는 방과후 과정 운영 외 업무지원 불가
  · 방과후 과정 보조교사로 운영 지원 불가
  ·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시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필히 임장
    ※ 특성화프로그램 시간에는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행정 업무에 활용하지 않도록 함 (임용 시간 준수)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최아람	전화번호	063) 270-6123

2-6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표창

추진 목적

- 유치원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직무만족도 향상
- 유아교육의 우수성 홍보 및 유아교육 기관의 위상 정립

추진 근거

-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2조, 제5조

추진 내용

-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
  - 시기: 2022. 12월
  - 대상: 공·사립유치원 유공교원 및 전문직, 업무담당 공무원
  - 표창기준: 교육부 2022년 표창 계획에 따름
- 전라북도교육감 표창
  - 시기: 2022. 12월
  - 대상: 공·사립유치원 유공교원
  - 표창기준: 전라북도교육청 2022년 표창 계획에 따름
-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
  - 시기: 2022. 11월
  - 대상: 공·사립유치원 유공교원
  - 표창기준: 전주교육지원청 2022년 표창 계획에 따름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구정은	전화번호	063) 270-6121

제3장

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지원 행정

3-1. 유아학비 지원

3-2. 다문화 유아 및 가정에 대한 지원

3-3.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

3-4.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

3-5.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

3-6. 유치원 신·증설 적정화

3-7. 4세대 지능형 나이스(유치원) 기반 구축

3-8. 유치원정보공시제도 정착

3-9.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운영 지원

3-10.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(처음학교로) 운영

3-11.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

3-1 유아학비 지원

추진 목적

-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절감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24조(무상교육)
-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
  -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 교육·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

추진 방향

- 안정적인 유아학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해소
-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 지원

추진 내용

- 유아학비(교육과정, 방과후 과정) 지원
  - 지원내용

구 분	지원대상
교육과정	-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 (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'19년 1~2월생으로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) - 취학 대상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방과후 과정	- 공·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(교육과정 포함 1일 7~ 8시간 이상)하는 유아

*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
  - 지원 연령 및 지원액

(단위: 원)

구 분	연 령	생년월일	지원액(1인당, 월)	
			공립유치원	사립유치원
교육과정	만 5세	2016.1.1.~2016.12.31.	100,000	280,000
	만 4세	2017.1.1.~2017.12.31.		
	만 3세	2018.1.1.~2019.2.28.		
방과후 과정	만 3~5세	2016.1.1.~2019.2.28.	50,000	70,000

※ 교육과정비: 2022.3.1.자 2만원 인상

● 유아학비 신청 절차 및 기타사항

-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, http://www.bokjiro.go.kr)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
- 유아학비 지원 연령 및 단가, 신청 절차, 무상교육 기간(3년) 종료 시 유아학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사전 안내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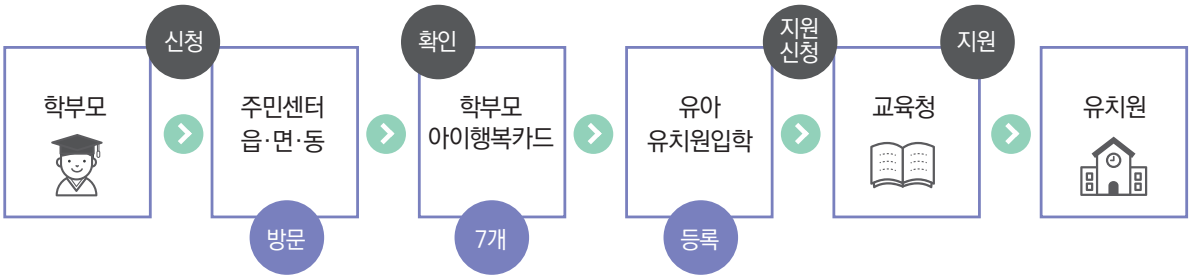

●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-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법정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학부모부담금 1인당 150,000원 실비 지원
- 보호자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e-유치원 시스템에 반영되면 자격신청일 기준으로 지원
- 지원 연령 및 지원액

(단위: 원)

구 분	연 령	생년월일	지원액(1인당, 월)	
			공립유치원	사립유치원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지원금	만 3~5세 (저소득층)	2016.1.1.~2019.2.28.	.	150,000 (실비 상한액)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최아람	전화번호	063) 270-6123

3-2 다문화 유아 및 가정에 대한 지원

추진 목적

-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함께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 실현
-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(유치원) 적응과 재능 발현을 지원하는 '다꿈교육' 활성화
-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기회평등 실현 및 다문화 인재 양성
- 다꿈부모나라 언어교실 지원을 통한 자긍심 및 정체성 확립

추진 근거

-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제2조, 제9조

추진 방향

-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
-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다양성 교육 실현

추진 내용

- 다문화유아의 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
-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및 인지능력 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교육 실시
- 다름에 대한 존중, 문화 다양성 교육, 언어교육, 학부모 및 교원 교육 지원
- 다문화가정 유아와 비다문화가정 유아가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실시
- 지원 사업

구 분	지원대상
다꿈유치원 지원(도)	- 다문화정책유치원: 사립 1개원 - 다꿈사랑방유치원: 공립 5개원, 사립 8개원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교육복지담당	담 당 자	주무관 여운선	전화번호	063) 270-6131

3-3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

추진 목적

- 공·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현
-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장애 교정,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
-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학습권 보장

추진 근거
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(의무교육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(특수교육 관련서비스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7조(통학지원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4조(치료지원)

추진 내용

-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

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신청서 제출	선정·배치 결과 통지	교육비 등 지원신청	교육비 등 지원	정산서 제출	교육비 지원 등 실적 제출
보호자 → 유치원 → 교육지원청	교육지원청 → 유치원	유치원 → 교육지원청	교육지원청 → 유치원	유치원 → 교육지원청	교육지원청 → 도교육청

- 유치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 지원

– 지원대상: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※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

– 지원내용
· 사립: 1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지원(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)

- 특수교육대상 유아 치료지원비 전자카드(꿈활짝카드)지원

– 지원대상: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

– 지원내용
·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· 치료지원 평가통지서 영역에 맞는 치료영역 신청 가능하며,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영역과 동일영역 지원 불가함

※ 치료 신청 영역: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(청능)치료, 보행훈련, 기타 관련 서비스(미술·음악, 심리운동, 감각통합)

●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학비 지원

- 지원대상: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중
  ·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,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유아
  ·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유아의 등·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
- 지원내용
  · 대중교통비, 통학버스비 기준으로 1일 2회 지원

※ 통학버스 이용의 경우 중복신청 불가함

● 특수교육대상 유아 방과후 과정 운영비 지원

- 지원내용: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 방과후 과정 신청자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
- 유아학비 신청자는 중복지원 불가

유의 및 주의 사항

①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교육비, 치료지원,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초등학교 취학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

② 누리과정 지원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람

③ 공·사립 유치원이 아닌 기관(어린이집 등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담당부서	중등교육과 진로·특수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서원욱	전화번호	063) 270-6063

3-4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

추진 목적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시설 이용
- 유치원 시설의 접근성 확보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

추진 근거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-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

추진 내용

- 편의시설 설치대상 교육기관 단계적 범위

적용시기	적 용 대 상
2009. 4. 11.	- 국 · 공 · 사립 특수학교 -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 · 공립 유 · 초 · 중 · 고등학교
2011. 4. 11.	- 국 · 공립 유치원 - 국 · 공 · 사립 초 · 중 · 고등학교
2013. 4. 11.	- 사립유치원

※ 편의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거 특수학급 설치여부 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이 설치 대상임

- 유치원 편의시설 설치항목

구 분	매개시설			내부시설			위생시설(화장실)		비고
	주출입구 접근로	장애인 주차구역	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	출입구 (문)	복도	계단/ 승강기	대변기	소변기	
유치원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의무	8개항목

※ 우선 설치 항목(공립유치원 자체 설치): 3개 항목
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(주차대수 10대 미만 비대상),
②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, ③ 소변기 핸드레일(유아용 소변기만 설치된 경우는 비대상)

담당부서	중등교육과 진로·특수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송성아	전화번호	063) 270-6066

3-5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

추진 목적

- 원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원비 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하여 손실금 보전
-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실현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6조의2

추진 방향

- 원비 안정화에 기여한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
- 전년대비 원비 인하, 동결 또는 원비 인상 상한율을 준수한 유치원에 동결지원금 지원
- 소규모·소액 유치원 지원을 위해 유치원 원비 및 유아 수에 따른 동결지원금 차등 지원

추진 내용

-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률상한제 지속 추진
  -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
  - 2022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('21.10.5.)
  - 유치원 원비 인상 상한율: 1.0%
    (재원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의 1.0% 이내로 원비 인상 가능)
- 유치원 원비 동결 및 지원 기준
  - 입학금, 교육과정비 간의 비용 이동은 가능하고 전년대비 원비 총액의 1.0% 이내 인상까지 동결로 인정하여 동결지원금 지원
    단, 유아수가 학급편성 최소 인원(도시지역 기준 5명) 이하인 유치원은 지원 제외
    ※ 기준: 2021년 유치원비
- 동결지원금 지원 방안
  - 소액·소규모 유치원 지원을 위한 차등 지원: 유치원 원비 및 유아 수 기준에 따라 원당, 학급당 차등 지원
  - 소규모 유치원 특별 지원: 유아 수 50명 이하 유치원 원당 100만원 추가 지원
- 사립유치원 재정 차등 지원을 통한 유치원비 안정화
  - 학부모부담 원비 수준을 고려하여 고액 원비 유치원은 유치원비 동결 시에도 동결지원금 지원 배제
    * 고액 원비 유치원: 전북 학부모부담 평균 원비의 2배 초과 유치원

●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점검단 구성·운영

- (구성 및 인원) 교육지원청별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·시행
- (점검 기간) 연중 상시 점검하며, 새 학기 시작 전 유치원비 과다 책정 사전 차단을 위하여 1~2월중 집중 지도·점검 추진
- (점검 사항) 원비 책정 근거, 인상 상한율 준수 여부 등 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한 사립유치원 지도·점검

주요 점검 항목

· 유치원비 징수고지서 세부항목별로 명시 여부
· 유치원비 구성항목 및 항목이동 편법 인상 여부
· 정보공시시스템, 유치원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유치원비 공고 여부
· 별도 항목을 신설하여 학부모부담금 추가 징수 여부
· 학부모부담 경비에 대한 정산 및 학부모 공개 여부
·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 준수 여부
· 유치원비 인상 시 유치원 원비 인상 사유 및 책정 근거
· 유치원비 통계 관리의 적정성(최근 3년간 유치원비 현황)
· 유치원비 결정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실시 여부(학부모부담 경비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실시 여부 포함)
· 신설유치원 원비 책정 적정성 여부 컨설팅
· 유치원 규칙 중 유치원비 관련 기재 내용의 적정성
※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제10조에 따라 "수업료·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"에 관한 사항 유치원 규칙에 포함

● 위반사실 적발 시 조치

-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행정상 착오 등은 현장 조치하되,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조치
- 시정·변경 명령 불이행 시, 기 지급한 지원금 반환 및 재정 차등 지원 등 조치
- 각종 지원금 회수 및 각종 지원 사업 대상에서 후순위
- 행정처리 절차에 의거 유아모집 정지, 학급 감축 등
  ※ 관련 근거: 유아교육법 제28조 및 제30조

주요 위반 사례

· 3월초 유치원비 안정화 정책에 협조하고, 추후에 인상하는 경우
· 유치원비 인상 상한율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
· 유치원비 징수내역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
· 유치원비 징수내역 보고 자료와 학부모 공지내용이 다른 경우
· 정보공시시스템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유치원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
· 보고한 유치원비 이외의 별도 항목을 만들어 학부모부담금을 징수한 경우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배수호	전화번호	063) 270-6122

3-6 유치원 신·증설 적정화

추진 목적

- 유치원의 유형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유아교육 개선

추진 근거

- 「유아교육법」 제3조(책임), 동법 시행령 제16조(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)

추진 방향

- 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
- 유치원 학급당 최대 유아 수 적정화 유지

추진 내용

- 2022.3.1. 공립유치원 신·증설 추진 현황

(단위: 학급)

구분	유형	지역	유치원명	2021. 학급 수			증설규모			2022. 학급 수		
				일반	특수	계	일반	특수	계	일반	특수	계
증설	단설	전주	전주새뜰유치원	7	0	7	5	3	8	12	3	15
	소계			7	0	7	5	3	8	12	3	15

- 유치원 학급당 최대 유아 수 적정화로 교실 수업 개선

(단위: 명)

구 분	정원 기준			최소인원 기준		
	공립유치원	사립유치원*		지역		최소 유아 수
		정원	허용			
만3세반	14	14	16(+2)	시(동)		5
만4세반	18	18	20(+2)	농어촌	읍	4
만5세반	22	22	25(+2)		면	4
만3~4세반	16	16	18		벽지	4
만4~5세반	18	18	24		도서지역	3
만3~5세반	16	16	18			

*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7년의 최대 유아 수 기준을 인정하되, 연령별(만3,4,5세)로 최대 2명 총 6명까지 기준 초과 학급 편성 가능

담당부서	행정지원과 학생배치담당	담 당 자	주무관 박지연	전화번호	063) 270-6075

3-7 4세대 지능형 나이스(유치원) 기반 구축

추진 목적

- 유아교육 전 주기 전자적 업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
- 4세대 나이스 기반의 유아교육 서비스 구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

추진 근거

-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(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, 제14조(생활기록부)
- 유아교육 전주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본 계획 (유아교육정책과-2539, 2020.5.1.)
-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정(유아교육정책과-5525, 2021.10.19.)

추진 내용

- 유아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를 통한 One-Stop 통합서비스 제공
  - 시스템 별로 분산 관리되는 데이터 통합 및 통합 인증 체계 구축
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내·외부 연계 서비스 도입
- 공·사립 유치원 유아교육 업무 정보화
  -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사행정의 정보화 및 회계시스템 연계
  - 자동 출결·학비 연계를 통한 교원 업무 경감
- 나이스 통합 활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
  - 유치원 생활 정보 전송을 통한 학부모 안심 서비스 지원
  - 온라인 민원 발급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배수호	전화번호	063) 270-6122

3-8 유치원정보공시제도 정착

추진 목적

-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 보장
- 유치원정보공시 자료 검증체계 구축을 통한 공시자료 신뢰도 향상
- 유치원 운영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

추진 근거

-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

추진 방향

- 유치원정보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
- 공시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

추진 내용

- 공시 후 유치원정보공시 점검: 공시정보 정기 현장점검 실시

시기	주관기관	대상기관	내용
하반기	· 교육지원청	- 반복적 오류가 많은 유치원 - 시정권고 · 명령을 받은 유치원	정보공시항목 및 오류사례 점검

*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유치원 현장 점검 시행 여부 및 추진 일정 조정

- 기관별 역할 정립을 통한 지원·관리체계 강화

구 분	지원 관리 내용
유치원	· 유치원정보공시 항목별 작성자/확인자 지정 · 운영 · 공시자료 입력 및 제출, 공시 · 공시입력 근거자료 관리
교육지원청	· 관할 유치원 공시업무 지원 · 유치원 공시자료 수합/관리 및 검증 · 공시정보의 질 관리 및 현장점검
도교육청	· 유치원정보공시 계획 수립 및 통보 · 유치원 공시자료 수합/관리 및 검증 · 공시정보의 질 관리 및 현장 점검 · 교육지원청 공시업무 지원

* 행정용 메신저, E-mail 등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공시 주기별·단계별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공시업무 추진 효율성 강화

• 공시 전 단계별 검증 체계화를 통한 공시정보 신뢰도 제고

해당기관	단계별 검증 내용
유치원	· 1차: 시스템 입력 전에 공시 입력근거자료를 작성하여 대조 · 확인 · 2차: 원자료 취합 후 나이스, e-유치원시스템 등 자료와 확인 검증 · 3차: 확인자가 검증 점검표(근거자료)를 이용 검증 ※ 정보 수정 및 재입력 시 1 · 2 · 3차 순 재검증
교육지원청	· 1차: 유치원에서 제출된 자료를 오류 검사에 의해 검증 · 2차: 유치원별 입력 자료와 '입력 근거자료'를 대조 · 확인 검증 ※ 오류 정보 입력 유치원에 통보하여, 시스템 입력 자료 수정조치 · 3차: 필요시 유치원 현장방문 실태조사 검증
도교육청	· 1차: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오류 검사에 의해 검증 · 2차: 유치원별 입력 자료와 '입력 근거자료'를 대조·확인 검증 · 3차: 각 세부항목 담당자(부서) 검증의뢰(필요시) ※ 오류 정보 입력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, 시스템 입력 자료 수정 조치

담당부서	중등교육과 전산담당	담 당 자	주무관 박진철	전화번호	063) 270-6053

3-9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운영 지원

추진 목적

- 유치원 전체 회계 업무에 대한 디지털 재정 운영을 통한 회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
- 법과 회계규칙에 기반을 둔 K-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강화

추진 근거

-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(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- 「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」 제53조의3(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·회계의 처리)

추진 방향

-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실시
-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

추진 내용

-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실시
  - 기간: 2022년 1월 ~ 12월
  - 대상: 전주관내 사립유치원
  - 장소: 교육지원청,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,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
  - 내용: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예산·수입·지출 시스템 기능 교육, 회계교육 등
- 사립유치원 K-에듀파인 상시지원체계 구축
  - 전주교육지원청 담당인력 및 희망사립유치원과 지방공무원 멘토 매칭 1:1 수시컨설팅 실시
  - 상설교육장 수시교육 및 시스템 작업 실시
  - 자체 콜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불편사항 처리
  - 원격지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상담 및 실시간 지원

담당부서	재정협력과 예산담당	담 당 자	주무관 이소정	전화번호	063) 270-6169

3-10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(처음학교로) 운영

추진 목적

-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 모집·선발을 통해 유치원의 공정성 확보
-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한 학부모 불편 해소 및 유치원 업무경감에 기여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11조, 제19조의2
-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·선발에 관한 조례

추진 내용

- 대상: 공·사립유치원
- 모집 시기: 2022. 11월
- 모집 방법: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「처음학교로」 활용(현장접수 가능)
- 지원 횟수: 신입생 3회 지원 가능(재원생은 타 유치원에 2회 지원 가능)

구분			2022학년도 유아모집
우선 모집	추첨 방식		희망 순 추첨방식
	선발 순위	1순위	특수교육대상자 우선 의무배정, 법정저소득층 가정 자녀(모집인원 100% 반영)
		2순위	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녀(모집인원 3% 이상 반영)
		3순위	북한이탈주민 대상 가정 자녀(모집인원 3% 이상 반영)
		4순위	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자녀(모집인원 50% 이상 반영) - 다문화 가정 자녀, 다자녀 가정(2명 이상) 자녀, 한부모(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) 가정 자녀, 장애부모 가정 자녀, 건강 취약 유아, 쌍생아
		5순위	유치원장 자율 결정(모집인원 40% 이내 반영)
일반 모집	추첨 방식		희망 순(중복선발제한) 추첨방식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정보영	전화번호	063) 270-6126

3-1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

추진 목적

-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 통로로 유치원 운영의 민주적 투명성 제고
-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19조의3
-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
- 2019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(학교교육과-2368(2019.2.19.))

추진 내용

- 유치원별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

– 설치 범위: 국·공립유치원과 유아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
– 위원 임기: 1년 또는 2년 중에서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 가능
– 위원 구성: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(5~11명 이내)
※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
– 위원회 성격: 국·공립유치원(심의기구) / 사립유치원(자문기구)

-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

국 · 공립유치원	사립유치원
·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·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·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·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·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·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·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·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·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, 임용, 평가 등에 관한 사항 ·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·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·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·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·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· 유치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	·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·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·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·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·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·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·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·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·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·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·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·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· 유치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

담당부서	재정협력과 재산·학부모담당	담 당 자	주무관 최다솜	전화번호	063) 270-6168

제4장

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
4-1. 유치원(기관)평가 운영
4-2. 유치원 보건환경 개선
4-3. 유치원 급식안전 강화
4-4.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
4-5. 행복안전유치원 운영
4-6.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
4-7. 유아 성교육 내실화 교육
4-8.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

4-1 유치원(기관)평가 운영

추진 목적

- 현장 중심 유치원 평가를 통한 유아교육 질 제고 및 교육서비스 개선
- 학부모의 알 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

추진 근거

- 유아교육법 제19조(평가)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(평가의 대상)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1조(평가의 기준)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(평가의 절차)

추진 방향

- 교육공동체의 성찰중심 자체평가로 유치원 환경 개선 및 교원 역량강화 지원
-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객관성, 신뢰성, 전문성, 효율성 확보
- 자체평가 실시로 유치원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
- 컨설팅 장학과 연계하여 영역별 내실있는 평가 실시

추진 내용

- 평가기간: 2022. 3. ~ 2023. 2.
- 평가대상: 공·사립유치원 전체
- 평가방법: 자체평가
- 평가영역: 교육과정,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, 건강·안전, 교직원
- 평가절차: 자체평가위원회 구성→자체평가→평가 결과 공개(유치원 홈페이지, 정보공시)

자체평가위원회 구성(매년 9월)	자체평가 (10월~11월 중)	평가 결과 도출 (12월 중)	평가 결과 공개 (다음 해 4월)
유치원 교육공동체 중심 구성 유치원 자체평가 계획 수립	평가영역 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 실시 영역별 우수한 점과 좀 더 노력할 점 추출	평가결과서 작성	유치원 정보공시탑재 (다음 해 4월)

※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평가위원회와 연계 가능
- 겸임원장(감), 보건, 안전, 예산 등 영역별 담당자 포함

-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
  - 자체평가 결과 및 영역별 특장점 공개
  -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공개(유치원 홈페이지, 정보공시)

기대효과

- 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으로 책무성 강화
- 유치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및 만족도 향상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정보영	전화번호	063) 270-6126

4-2 유치원 보건환경 개선

추진 목적

- 유치원 먹는 물 위생관리 강화 및 원사(園舍) 내 공기 질 개선

추진 근거

- 전라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
- 환경보건법 제2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
-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

추진 방향

-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한 학생 건강 보호
- 원사(園舍) 내 공기 질 유지·관리를 통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

추진 내용

- 원사(園舍) 먹는 물 관리
  - 먹는 물(정수기) 수질검사 실시: 연 4회(분기별)
  - 저수조 수질검사: 연 1회 이상
  - 급수관수 수질검사: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 1회 이상
  - 저수조(물탱크) 청소: 연 2회(반기별 1회) 실시
- 원사(園舍) 내 공기 질 관리
  -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미세먼지, 이산화탄소 등 13종에 대하여 공기 질 측정

담당부서	생활교육과 보건담당	담 당 자	주무관 김재범	전화번호	063) 270-6099

4-3 유치원 급식안전 강화

추진 목적

- 유치원 급식시설·설비 등의 위생관리 기준과 균형 잡힌 영양관리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환경 조성
- 건강 취약 계층인 유아에 대한 식중독 등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

추진 근거

-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(학교급식대상), 제6조(급식시설·설비), 제7조(영양교사의 배치) 등
- 식품위생법 제2조, 제3조, 제88조, 동법 시행규칙 제96조
-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2조

추진 방향

- 유치원 급식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여 유치원 급식운영의 내실화 도모

  ※ 다만, 유아 수 100명 미만 유치원(10월 정보공시 기준)은 「유아교육법」 적용 및 해당 시·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·관리 받아야 함

- 유치원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

추진 내용

- 유치원 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위생·안전 관리 강화

  -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통해 급식 제공
  - 「학교급식법」 대상 유치원의 영양(교)사 배치로 영양·위생 관리 강화
  - 급식 운영평가 연 1회, 위생·안전 점검 연 2회 실시
  - 「학교급식법」 대상 유치원 조리용구 미생물 검사 연 1회 실시
  - 급식관계자 위생·안전 교육 실시
  -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검진 실시

- 보존식 관리 및 검식

  - 보존식은 당일 제공된 모든 음식(간식 포함)을 100g씩 냉동실(-18℃ 이하)에서 144시간(6일)이상 보존
  - 조리 완료 즉시, 배식하기 전에 조리책임자 및 급식 관리자가 검식 후 결과를 “검식일지”에 기록, 비치

-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

  -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「식재료 품질관리 기준」 준수
  -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, 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검수서 작성·보관
  -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의 원산지를 식사 장소, 누리집 등에 게시·공개

- 유아 성장 발달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준수
  - 유아 영양관리기준 준수(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5조 관련 별표3)
  - 제공 식단의 영양량 및 알러지 유발식품 정보를 식사장소 및 누리집 등에 게시·공개

담당부서	생활교육과 학교급식담당	담 당 자	주무관 남궁현	전화번호	063) 270-6067

4-4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

추진 목적

- 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
- 유아 안전사고 발생 요인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

추진 근거

-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

추진 내용

- 유아 실종 예방 관련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
- 유아 건강검진 정보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연계 안내
- 유아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안내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배수호	전화번호	063) 270-6122

4-5 행복안전유치원 운영

추진 목적

- 유치원의 유아 건강·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-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교직원 안전의식 고취 및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

추진 근거

- 국정과제 49-1.「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」
- 2021 유아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기본 계획(유아교육정책과-4854(2021.9.10.))

추진 방향

- 안전 관련 환경 개선 의지를 반영한 사업 대상 유치원 선정
-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역량 연수 및 종합 컨설팅 실시
-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한 학부모의 신뢰도 제고
- 개선 사례에 대한 홍보 및 일반화

추진 내용

- 수요조사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 공·사립유치원 지원
- 안전·교육·예산 분야 종합컨설팅 실시
- 유아, 학부모 및 교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신뢰도 제고
- 운영 결과 나눔 및 결과보고서 제출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배수호	전화번호	063) 270-6122

4-6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

추진 목적

-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 및 의심 시 신속한 신고로 아동학대 예방
- 조기발견을 위한 유치원 결석 아동 및 위기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

추진 근거

-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및 제26조
-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
-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

추진 내용
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
  -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
  - 유치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
  -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(112)에 신고 등 필요 조치 이행
  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,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 - 무단결석 아동 및 퇴학 아동 관리 강화
    -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안전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
    - 명확한 사유 없이 자퇴 신청 시,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
    - 아동의 출결사항을 매일 확인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
-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
 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에 따른 교원, 직원, 산학겸임교사, 강사 등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해당
  - 유치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
  -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즉시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로 대상자의 성명, 연락처, 대략적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
  - 교육 미 이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,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 필수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배수호	전화번호	063) 270-6122

4-7 유아 성교육 내실화 교육

추진 목적

- 유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으로 성 인권 침해 사전예방
- 유아 성 행동(문제)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 성 행동(문제) 문제 예방
- 유치원 교원의 유아 성 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업무 대응력 제고

추진 배경

-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4927(2020.8.27.) 유치원 성교육 내실화 추진 안내
- 교육부(2020.8.) 유치원 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 대응 지침

추진 내용

- 유치원별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유치원 성교육 운영

–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

· 유치원별 성교육 업무 담당 교원(유치원, 학급)을 지정하여 성 행동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지원 및 사안 발생 시 신속 처리

· 유치원 성교육 담당교원 연수 이수 및 전달 연수 실시(최소 3시간 이상)

– 성교육 계획 수립

· 유아 성 행동 판단 기준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, 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활용한 단위유치원별 성교육 계획 수립·정비

·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누리과정 내용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 대상 성교육 내실 운영(8시간 이상)

- 유아 성 행동 수준에 따른 교육(지원)청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

– 교원 등 연수 지원, 성 행동 조치 사례별 종합적 대응 방안 지원을 위한 유아 성 행동문제 사례위원회 구성·운영

▸ (목적) 유아 연령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 행동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통해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사안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 지원
▸ (구성) 교육청(총괄), 유아교육전문가, 해바라기센터, 의사, 경찰,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
▸ (역할) 행동수준별 유아 성 행동 중 자문, 초기 조사에 따른 사례 평가, 부모간 중재안 및 상담·치료 연계, 교육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
▸ (절차) 사건발생 접수 → 초기조사(의료기관,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과 합동) → 사례위원회 → 사후 관리

• 유아 성 행동 수준에 따른 관리·대응 체계

행동 수준	일상적인 수준	우려할 수준	위험한 수준
유치원 대응	• 유아 성교육담당자 지정 • 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, 지도, 관찰 • 일상적 행동에 대한 부모 소통·교육 • (필요시) 교육청 자문 요청	• 행동중지, 상황 파악 • 부모 면담 • (필요시) 학부모, 유아 대상 관련 교육 • (필요시) 교육청 자문·지원 요청	• 즉시 중지, 분리 조치, 모든 유아 보호 • 상황 파악 • 보호자 연락, 피해아동 치료 연계 • 교육청 즉시 보고 및 사례관리 지원 요청
교육(지원)청 대응	• (요청시) 유치원 방문 컨설팅 • (필요시) 유치원 자문·대응 지원 • 우려 또는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시 상위 수준에 맞게 대응	• 유치원 자문 • 사례별 대응 지원 • 자문·지원 과정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시 사례위원회 회의 요청(위험한 수준에 준하여 대응)	• 관할청 보고 ※ 교육지원청 →교육청→교육부 • 초기조사 지원 • 사례위원회 총괄 지원 • 중재안 및 치료·상담 등 사후관리 연계 방안 마련 지원 • 관련 내용 모니터링 지속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장학사 정보영	전화번호	063) 270-6126

4-8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

추진 목적

- 유치원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과정(방과후 과정) 운영 지원
-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 제공
- 유아와 자원봉사자 사이의 감성 교류를 통한 유아의 안정된 정서 함양 도모

추진 근거

- 2022 전라북도 유아교육 운영계획(전북교육 2022-099)

추진 내용

- 자원봉사자 대상: 만 60세 이상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봉사 정신이 강한 여성
- 운영기관: 공·사립유치원, 유아교육진흥원(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포함)
- 위촉기간: 2022. 3월 ~ 2023. 2월(1년 이내로 설정)
- 봉사시간: 주 14시간 이상 ~ 주 15시간 미만
- 실비(교통비 등): 1일 22,000원
  - 소요 예산은 운영 유치원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
  - 임금의 개념이 아닌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에 대한 실비(교통비)로 초과 지급 불가

    ※ 유치원과 자원봉사자가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내용 결정
- 시니어클럽 연계 유치원 보조인력 지원 협약 체결
  - 2021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(2021.8.10.)
  - 인력 관리 및 예산 주관 기관: 전라북도청

    ※ 유치원에서 자원봉사자 인력 필요 시 직접 지역 시니어클럽에 문의

    (「알림」 시니어클럽 연계 유치원 보조인력 마련 안건 협약 체결 안내, 학교교육과-17642, 2021.10.31. 공문 참조)

담당부서	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	담 당 자	주무관 배수호	전화번호	063) 270-6122

2022년 주요 행사 일정

월	주요 행사	월	주요 행사
1월	· 전주유아교육계획 수립	8월	·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· 여름방학 중 유아생활지도
2월	· 2022 주요업무보고(도) · 2022 전주유아교육계획 설명회 · 사립유치원 1:1 맞춤형 컨설팅 지원 · 교육실습협력유치원 안내 · 단위유치원 교육과정 계획 수립 완료	9월	· 바깥놀이 공간 혁신을 위한 놀이터 탐방 · 2023.3.1.자 신설유치원 개원 지원팀 구성 및 운영 · 놀이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사 연수
3월	· 원장과 함께 하는 정책 간담회 · 원감과 함께 하는 행정실무 연수 ·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자체 계획 안내 · 소통과 협력의 컨설팅 지원 계획 안내 · 놀이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사 연수 · 교원 자율동아리 조직	10월	·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교사 연수 · 함께 하는 학부모를 위한 연수 ·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시스템 사용 연수 · 돌봄교실 운영 지도 점검
4월	· 저경력교사 성장 지원 연수 · 저경력교사 성장 지원단 운영 수립 ·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원 연수 ·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	11월	· 공립유치원 전임 원감 역량 강화 연수 ·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·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 ·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·유아학비 점검
5월	· 저경력교사 성장 지원 연수 ·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한 생태놀이 연수 · 유치원 자원봉사자 연수 · 교육과정 운영 지도 점검 및 현장 지원 · 돌봄교실 운영 지도 점검 · 4세대 지능형 나이스(유치원) 구축	12월	· 유아교육발전 유공교원 표창 · 소통과 협력의 현장 지원 사례 나눔
6월	· 저경력교사 성장 지원 연수 · 독서한마당 행사 · 공간혁신을 위한 선진 교육기관 탐방 ·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을 위한 생태놀이 연수 · 수석교사와 함께 하는 관찰·기록·평가 ·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·유아학비 점검	2023. 1월	· 겨울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· 겨울방학 중 유아생활지도
7월	· 사립유치원 원장 역량 강화 연수 ·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연수 · 수업동아리활동 중간 나눔	2023. 2월	· 새학년 교육과정 세움 기간 운영 · 신설유치원 환경 및 시설안전 준비

• 일정은 변동 및 추가될 수 있음

교직원 의무연수 안내

순	교육명	횟수·시간	관련근거 및 교육방법 (부록❷의 관련 근거 참조)	운영 방법	담당부서
1	안전교육	3년마다 15시간 이상	・교직원 등: 3년 15시간 이상(2021.3.~2024.2.) ・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: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・교육활동참여자: 연간 1회 이상	원격 집합	정책공보관
2	청렴교육	연 1회 2시간 이상	「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**」 제88조의2 ・신규임용자 및 승진자 등인 경우 대면(對面)교육 필수	원격 집합	감사관
3	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	연 1회 이상	「**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**」 시행령 제42조 ・공직자 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	원격 집합	
4	행동강령 교육	연 1회 이상	「**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**」 제22조 ・신규 임용, 교감 및 사무관 승진(예정)자 등은 교육 필수	원격 집합	
5	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	연 1회 이상	「**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**」 제8조 ・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 필수	원격 집합	
6	교권보호 교육	연 1회 이상	「**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**」 제16조의3 ・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	원격 집합	교원인사과
7	장애인식개선교육	연 1회 이상	「**장애인복지법**」 제25조(사회적 인식 개선) 「**같은 법 시행령**」 제16조(사회적인식개선교육) ・대상: 교직원(교육공무직원 포함)	원격 집합	교육혁신과
8	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	연 1회 이상	「**긴급복지지원법**」 제7조 제4항 ・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및 신고방법 ・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	원격 집합	
9	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	연 3시간 이상 (실습2시간)	「**학교보건법 시행규칙**」 제10조(별표9) ・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(실시일이 다를 경우 최소 4시간)	원격 집합	인성건강과
10	성폭력예방교육	연 1회 1시간 이상	「**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」 제5조 ・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(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) ・각 교육별 대면(對面)교육 필수	원격 집합	
11	성희롱예방교육	연 1회 1시간 이상	「**양성평등기본법**」 제31조 ・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(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) ・각 교육별 대면(對面)교육 필수	원격 집합	
12	성매매예방교육	연 1회 1시간 이상	「**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」 제5조 ・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(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) ・각 교육별 대면(對面)교육 필수	원격 집합	
13	개인정보보호교육	연 1회 2시간 이상	「**개인정보 보호법**」 제28조 ・각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, 담당자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교직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이수	원격 집합	미래 인재과
14	정보보안교육	연 1회	「**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**」 제9조 ・각 기관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1회 정보보안 교육 실시	원격 집합	
15	학교폭력예방교육	학기별 1회 이상	「**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**」 제15조 ・학교폭력 관련 법령,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,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	원격 집합	민주시민 교육과

순	교육명	횟수·시간	관련근거 및 교육방법 (부록❷의 관련 근거 참조)	운영 방법	담당부서
16	가정폭력예방교육	연 1회 1시간 이상	「**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**」 제1조의2제2항 ・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(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) ・각 교육별 대면(對面)교육 필수	원격 집합	민주시민 교육과
17	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	연 1회 1시간 이상	「**아동복지법**」 제26조 ・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	원격 집합	
18	자살예방 교육	연 6시간 이상 권장	「**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**」 제17조 ・생명존중의 중요성,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, 자살 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 등을 교육	원격 집합	
19	인권교육	연 2회 이상	「**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**」 제31조(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)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・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에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편성	원격 집합	
20	다문화이해교육	연 2시간	「**다문화가족지원법**」 제5조, 제10조 ・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	원격 집합	
21	통일교육	연 1회 1시간 이상	「**통일교육 지원법**」 제6조의7 ・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	원격 집합	
22	인성교육	연 4시간 이상	「**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**」 제14조 ・인성교육의 개념, 목표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교원연수 계획 수립	원격 집합	
23	소방훈련·교육	연 2회 이상	「**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**」 제14조 ・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실시 (단, 합동훈련 제외 대상기관은 자체훈련으로 대체)	집합	총무과
24	사회복지교육	연 4시간	「**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**」 ・사이버교육, 헌혈, 사회봉사활동(지방공무원에 해당)	원격 집합	
25	학교석면 안전교육	연 2회	「**석면안전관리법**」 제24조 ・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・교육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집합교육 실시(석면 보유학교)	집합	시설과
26	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교육	연 1회	・설비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(해당 학교)	원격 집합	
추가	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	연 1회 1시간 이상	「**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**」 제5조의2(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) ・대상: 교육공무직원	원격 집합	교육혁신과
추가	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	연 1회 1시간 이상	「**장애인복지법**」 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) ・대상: 교직원(교육공무직원 포함)	원격 집합	
추가	정보통신윤리교육 (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)	연2회 이상	「**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에 관한 조례**」 제4조1항 및 3항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인터넷중독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	원격 집합	미래 인재과

※ 교직원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원격연수로 개설(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)하여 운영
※ 이외 의무연수가 있을 시 해당 업무 부서에서 안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

☞ 출처: 2022 주요업무계획

MEMO

2022
전주유아교육계획

발행일: 2022년 2월
발행처: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